기구 통·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

사건번호 대법 2001도1687

판결요지

1.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,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,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,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,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.

2.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·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,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

[주 문]

상고를 모두 '기각' 한다.

[이 유]

1.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, ○○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단 출범과 관련하여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조직일원화, 업무일원화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0. 5. 16 노조원들에게 이 사보류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노조원들로 하여금 같은 달 17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정부 및 ○○공단(이하 '공단' 이라고만 한다)의 사무실 이전지시에 불응하고 사무실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,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00. 5. 18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쟁의행위를 하여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,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공단의 본부나 지사 건물에 침

입한 사실,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00. 6. 30 그 판시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여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,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공단 본부건물에 침입하고,피해자 박○○,조○○ 등을 감금하거나 피해자 김○○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,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.

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,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,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,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,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.(대법원 1991. 5. 24 선고 91도324 판결),(2001. 5. 8 선고 99도4659 판결 등 참조) 그리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·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,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.(대법원 2001. 4. 24 선고 99도48939 판결,2001. 5. 8 선고 99도4659 판결 등 참조)

기록에 의하면,피고인들의 2000. 5. 1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의 쟁의행위의 목적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○○공단의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조직일원화 및 업무일원화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시 투쟁사나 구호 등을 보더라도 단순히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부수적인 목적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,피고인들의 2000. 6. 30 쟁의행위는 약 2,5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공단 본부건물에 침입하여 그 중 '사수대'라고 불리우는 50여명의 조합원들이 건물 6층 이사장 부속실 등에,그 밖의 조합원들이 1층부터 7층까지의 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위 건물을 완전 점거하여 공단 이사장인 박○○ 등 임직원을 감금,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.

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그 목적,수단 및 방법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,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2 피고인 신○○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,이들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